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 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해당일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피보험자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종피보험자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해당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 연금지급개시일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수익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안에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보험계약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피보험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당일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형은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개인형
 - 전환 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

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배우자, 부모 또는 직계비속

2. 부부형

○ 주피보험자

- 전환 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

○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⑤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1) “연금지급 기준표” 참조]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개인형

: 정액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체증형 10년(10회)보증, (5%, 10%체증)

체증형 20년(20회)보증, (5%, 10%체증)

○ 부부형

: 정액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체증형 10년(10회)보증, (5%, 10%체증)

체증형 20년(20회)보증, (5%, 10%체증)

○ 가족사랑연금형

: 100%지급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200%지급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300%지급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상속연금형

- ②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연금지급개시일에 피보험자 중 1명만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형으로 전환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해당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5%)로 적립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m)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4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해당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당

일부 10년이 지나지 않은 특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형태 중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총 한도는 상속연금형의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약환급금 및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1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2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종 신 연 금 형	개인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10년(10회),20년(20회), 30년(30회),100세보증] - 체증형 10년(10회)보증 (5%,10%체증) - 체증형 20년(20회)보증 (5%,10%체증)
		주피 보험자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10년(10회),20년(20회), 30년(30회),100세보증] - 체증형 10년(10회)보증 (5%,10%체증) - 체증형 20년(20회)보증 (5%,10%체증)
		배우자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 피보험자가 보증 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되는 연금액의 50% 지급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가 족 사 랑 연 금 형	종신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 있 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10년(10회),20년(20회), 30년(30회),100세보증]
			가족 사랑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과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형의 지급배수 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사망 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20년 (20회)동안 확정 지급 (100%, 200%, 300%지급형)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 년, 20년, 25년, 30년)의 매년 계 약해당일에 확정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액은 계약해당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계산은 보험기간중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액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나누어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가족사랑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은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에 적용하는 체증률(5%, 10%)은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 대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100세 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8.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9. 가족사랑연금의 경우 매년 연금액을 “사망시 수익자”(“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며, 해당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12. 상속연금형에서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 관련)

1. 생존연금 (제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약환급금 (제1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일자 계산하며, 제1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